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Brief*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에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분기별로 정리해서
*Brief*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 II. 주요 규제 동향
- III. 국내외 뉴스
- IV. FAQ
- V. 주요 행사

본 자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문에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또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Deloitte Korea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Deloitte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 Center for Audit Quality(CAQ)

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 당면과제 및 위원회 구성

-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실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딜로이트 글로벌의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와 Center for Audit Quality (CAQ)에서는 미국 대형 상장법인(80%는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의 감사위원 164명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 구성, 감독 영역, 핵심 리스크 및 감사위원회 실무에 관하여 서베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함
- 주요 서베이 결과
 - 재무보고 및 내부통제 항목 제외 시 감사위원회가 향후 12개월간 가장 집중해야 할 3대 중점 리스크 영역으로 사이버보안(63%)-전사 리스크 관리(45%)-ESG 공시 및 보고(39%)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92%는 감사위원회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집합적 경험을 적절히 보유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응답자의 25%는 향후 1년 내에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 응답자의 74%는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교체 규정이 부재하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4%만이 신입 이사가 감사위원회에서의 업무수행을 요구받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되는 감사위원회 구성의 변경은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보임
 - 본인이 감사위원으로서 적절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역으로 사이버보안과 기술 영역에 대한 전문성 보완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여기고 있음
 - 응답자의 93%는 본인이 감사위원회에 재무·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실제로 42%의 응답자는 감사위원회 내 3명 이상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함
 - 감사위원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다양성 특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는 성별(58%), 민족/인종(48%)과 성 소수자(12%)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5%의 응답자는 중요시되는 항목이 없다고 응답함
 - 사이버보안의 감독 책임의 주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는 감사위원회(53%)-이사회(26%)-리스크위원회(11%) 순으로 지목했으며, 응답자의 41%만이 본인이 감사위원으로서 적절한 사이버보안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직 내 전사 리스크 관리의 감독 책임의 주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는 감사위원회(43%)-이사회(28%)-리스크위원회(21%) 순으로 지목했으며, 응답자의 75%는 감사위원들이 전사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경험 및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함
 - ESG 공시 및 보고의 감독 책임의 주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는 감사위원회(34%)-이사회(27%)-임원후보추천/거버넌스위원회(16%) 순으로 답하였으며, 응답자의 32%는 감사위원으로서 적절한 ESG/지속가능성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함
 - 전체 응답자의 20%만이 부정 리스크를 향후 12개월 간의 예상되는 3대 중점 리스크 영역 중 하나로 지목함

다운로드



QR 코드



* 서베이 결과는 중복응답을 포함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On the audit committee's agenda 1월판

2023년 ESG 거버넌스의 새로운 트렌드

- ESG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제는 특정 이사회의 책임과도 정확하게 부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이사회 산하 소 위원회 구성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ESG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있음
- 기후 리스크 공시에 대해 제안된 SEC규정은 ESG의 "환경(E)"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치 체제 및 규제와 이해관계자의 기대가 높아지는 환경에서 기업은 ESG에 관련해 정의된 각 구성요소 뿐 아니라 전반적인 ESG 전략에 대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활용을 고려해야 함
- ESG 공시 방식은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변화하고 공시 내용은 연간 재무보고와의 일치성이 높아짐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관련 데이터·측정 통제와 관련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ESG 전반에 걸친 감독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주요 트렌드 요약
 - ESG 미공시가 사라지는 추세 - S&P 500 기업을 대상으로 한 Deloitte의 위임장 조사에 따르면, 2022년 ESG 이사회 거버넌스 접근 방식에 대해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기업은 3%에 불과했으며, 이는 2021년 14%, 2020년 28%에서 급격히 감소한 비율임
 - ESG에 대한 1차 위원회의 감독 동향 - 응답 기업의 63%는 임원후보추천/거버넌스위원회를 ESG의 단독 또는 1차 감독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선택지로 지목하였으며 이는 전기 대비 10%p 증가한 수치임
 - 증가하는 복수위원회/이사회 ESG 프레임워크 - S&P 500 기업의 위임장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51%는 위원회와 결합된 이사회 또는 복수위원회에 ESG 감독 활동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함

다운로드



QR 코드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On the board's agenda 2월호

기술 트렌드가 거버넌스와 감독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 본 보고서는 기술의 참신함이나 혁신성보다는 비즈니스 사례를 기반으로 하는 전체적인 거버넌스 접근 방식을 제안함
-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기회와 위협요소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이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보편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이사회의 기술 대응 또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관심주제가 되었음
- 첨단 기술 혁명은 규모의 경제를 개선하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한편 기술이 제공한 풍요로운 혜택은 경제적 불평등, 규제 조사와 소비자 불신을 증가시킨 부분도 있음
- 효과적인 기술 감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술 기반의 거버넌스 전략을 위한 지침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지침으로는 6가지 동인 - 혁신적인 거시적 동인(상호작용, 정보, 계산)과 근본적인 거시적 동인(기술 비즈니스, 사이버 및 신뢰, 핵심업무의 현대화)가 있음
- 기술 기반으로 거버넌스 전략을 구성하는 프레임워크는 (1) 기술을 모든 구성원이 형성하는 이사회 차원의 전략으로 고려하고, (2) 기술 감독을 거시적인 수준의 혁신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한 능동적인 방법으로 구성하며, (3) 기술 트렌드의 거시적 동인을 거버넌스 의사결정에 통합하는 방법을 포함함
- 기술에 능통한 거버넌스가 리스크를 완화하고 기업의 경쟁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질문
 - 기술 전략이 기업의 포괄성 및 형평성에 대한 가치와 일치하는가? 경영진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이러한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는 체크포인트가 있는가?
 - 기술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와 위협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전략은 무엇인가?
 - 해당 분야에서 총체적인 전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경영진 외의 내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필요한가?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언제 수집되어야 하는가?
 - 혁신을 활용(또는 미활용)하기로 한 의사결정은 이사회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관계를 어떻게 개선(또는 저하)할 수 있는가?

다운로드



QR 코드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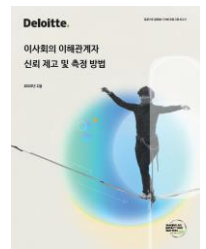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이사회 이해관계자 신뢰 제고 및 측정 방법

-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에서 기업과 이사회가 어떻게 신뢰를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는지 탐구하기 위해 30개국, 177명의 이사회 멤버와 최고경영진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함
- 기업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고 보호하는 것은 평판 측면뿐만 아니라 재무성과의 중요한 동인으로서 지속적인 생존과 성공에 필수적임
-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은 시장가치에서 동종 기업보다 최대 4배 더 우수하며, 고객 중 88%가 그들이 신뢰하는 브랜드에서 재구매할 의향이 있고, 기업이 신뢰를 구축하지 못할 때 고객 인식이 하락하여 브랜드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신뢰와 직원 참여도 간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고용주를 매우 신뢰하는 직원의 79%가 업무에 대한 의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서베이 주요 결과
 - 응답자의 약 5분의 4는 신뢰가 사업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직원 참여도와 고객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각 79%와 76%로 나타남
 - 응답자의 약 3분의 2는 기업이 신뢰에 대해 사전예방적 접근방식을 취하며 진행중인 사업 운영에 신뢰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고했으며, 나머지 3분의 1의 응답자는 사후대응적 태도를 보임
 - 응답자의 22%는 기업이 신뢰에 대해 일관된 접근법이 없다고 답했고, 8%는 위기상황 발생 시에만 신뢰를 우선시한다고 답함

다운로드



QR 코드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분기별 이사회 우수사례 1월호

초심으로 돌아가기: 이사회 구성 및 교체

- ▶ 본 보고서는 이사회 구성의 여러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이사회가 근본적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장 많이 혹은 적게 선임되는 전문성 경력 분야와 다양한 속성, 교체 사유, 규정, 사례 및 방법 등 이사회 이사 선임 관행과 우선순위를 살펴봄
- ▶ 본 보고서는 135개 상장법인을 대표하는 기업 거버넌스 협회(Society for Corporate Governance)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11월 서베이 결과를 기반으로
- ▶ 서베이 주요 결과
 - 지난 1~2년 간 선임·지명된 이사들의 배경과 전문성 경력 중 상위 5가지는 홍보·커뮤니케이션, 문화·윤리, 학계·교육, 초임 이사(비영리법인 제외)와 기업 운영활동으로 나타남
 - 향후 1~2년 내에 선임될 이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상위 5가지 배경 및 경험은 전략, 지속가능성, 국제성, 특정적인 다양한 특성과 IT(예: 인프라 및 운영)로 나타남
 - 이사회 구성 변화에 가장 일반적으로 언급된 요인은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추구(57%)' 및 '이사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질서정연하고 계획된 승계(55%)'로 나타남
 - 이사회 구성 변화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언급된 영향요인은 연령 제한 정책으로 인한 '기존 이사의 사임 및 퇴임'(각 29%와 27%), '질서정연하고 계획된 승계'(22%), '다양성' (15%) 순으로 나타남
 - 이사회 효과성을 이사회 구성 변화의 영향요인으로 지목한 경우는 대형 상장법인(28%)이 중형 상장법인(8%)보다 많았으며, '질서정연하고 계획된 승계'를 지목한 경우 또한 대형 상장법인(67%)이 중형 상장법인(46%)보다 많았음
 - 이사회 규정에 연령 제한 규정이 있는 기업의 경우, 75세(51%) 및 72세(38%)로 나타남

다운로드



분기별 이사회 우수사례
초심으로 돌아가기: 이사회 구성 및 교체

QR 코드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On the Board's Agenda 1월호

2023년 이사회 아젠다

- 2018년 1월 발행되었던 On the Board's Agenda 초판과 5년 후인 본판의 안건을 비교해 보면 2023년에 다양한 새로운 주제가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일부 주제가 부분적으로 변경되더라도 계속해서 이사회 고려대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물론 2018년 이후에 이사회 안건에 많은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2023년에도 우선순위 항목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됨
- 가장 중요한 새로운 주제는 사회 전반에서 기업의 역할로, 2019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법인의 목적에 관한 성명서(Statement on the Purpose of the Corporation)"를 발표하며 해당 주제에 관심이 집중된 이후 기업이 직원, 고객, 공급업체 및 그들이 활동하는 지역사회와 같은 주주 이외의 단체에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고 일부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
- 이사회에 영향을 미친 다른 사회적 문제로는 기업과 이사회가 공정하고 포용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게 만든 광범위한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대한 관심에 기여했을 수 있는 다양한 사건과, 업무공간 및 인력 문제, 코로나19 팬데믹 등이 있음
- 지난 5년 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 몇 가지 중요한 주제와 2023년에 이사회 안건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최근 부각되는 안건: 사이버보안, 이사회 효율성, 기후변화, 사회 내 기업 역할, 인재관리
 - 지난 5년 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안건: 전략 및 리스크 감독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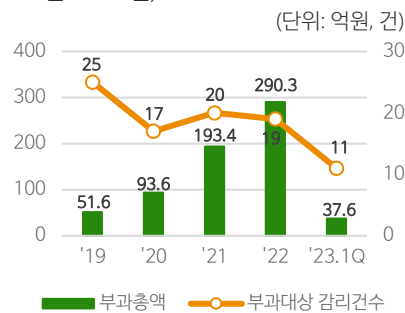
2023.4.24 (월) 금융감독원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

- ▶ 상장회사를 포함한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고의·중과실)하여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18.11월 시행)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
- ▶ 최근 5년간 회계조사감리 결과, 92사에 대해 총 66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및 중대 회계사건 처리 등에 따라 부과총액은 증가 추세임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462.2억원(69.3%)으로 비중이 크고,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은 204.3억원(30.7%) 수준임

<표1> 과징금 부과현황 ('19.1월~'23.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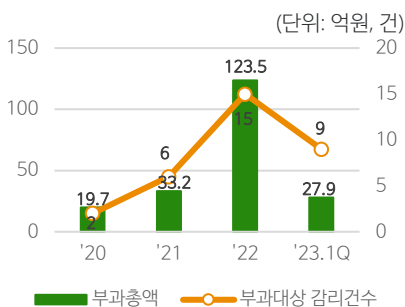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1Q	누계
부과총액	51.6	93.6	193.4	290.3	37.6	666.5
부과대상 감리건수	25	17	20	19	11	92
평균 부과액	2.1	5.5	9.7	15.3	3.4	7.2



- 같은 기간 동안 부과된 과징금 중에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은 총 204.3억원이며, 부과액과 부과건수*가 점차 증가함
 - * 회사/임직원/감사인" ('20년) 1건/2건/0건 → ('21년) 1건/6건/1건 → ('22년) 10건/14건/8건
 - 회사 과징금이 126.5억원으로 가장 많고(61.9%), 회사관계자 55.4억원(27.1%), 외부감사인 22.4억원(11.0%) 순으로 나타남

<표2>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현황 ('20.1월~'23.3월)

구분	'20년	'21년	'22년	'23.1Q	누계
부과총액	19.7	33.2	123.5	27.9	204.3
부과대상 감리건수	2	6	15	9	32
평균 부과액	9.8	5.5	8.2	3.1	6.4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 효과 및 시사점

- 비상장회사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조치대상이 확대됨
- 회계부정 연루자에 대한 금전제재가 가능해져 제재 실효성이 강화 및 회계기준 준수 의식이 제고됨
- 감사보수를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 유인이 증대됨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4.24 (월) 금융위원회

상장회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5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되었던 2개의 하위규정*도 같은 날 고시하여 시행할 것임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 이번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작년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정책과제의 법제화와 더불어, 회계부정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 것임

-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

1.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이 자산 1천억원 이상에서 자산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중소기업까지 대형 비상장회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자산 5천억원으로 기준을 합리화 하는 것임
 -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현행 기준(자산 1천억원)이 그대로 적용됨
-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이번에 변경되는 대형 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되며, 변경된 기준은 '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2. 경영진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수준이 회사의 개선노력과 연계되지 않고 있어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시정 유인이 낮았던 점을 감안하여,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함
- 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설계·운영·평가·보고)이 운영되고 있어 기업들의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회계감독기관(금융감독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함

3.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 강화

- 종전에는 자진신고자가 신고대상이 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조치가 감면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경될 수 있도록 함

* ①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에게 강요하지 않았을 것 & ② 신고사실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이 보유한 정보가 아닐 것 & ③ 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할 것

-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화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규모 확대(현재보다 5배 이상)를 위해 등급별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중요도가 낮은 차감요소는 최소화함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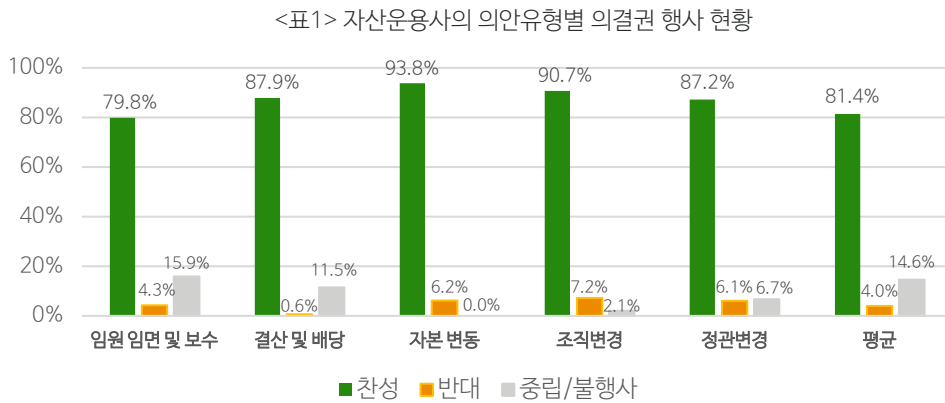
2023.4.13(목) 금융감독원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T/F 출범

-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 등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시 참고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

*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 <예> 지배구조 등 중요 안건에 대해 반대이견 제시를 위한 판단기준 부족, 최근 글로벌 화두인 환경·사회적 책임 등과 관련된 사례 부족 등



다운로드



QR 코드



- 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동 가이드라인이 실효성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해 지난 4월 12일에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와 함께 실무 T/F를 구성·출범함

* 주식형 펀드 운용규모, 의결권 행사 업무 전담조직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7개사 선정

- 세부 논의주제(안)

구분	내용
현황 분석 및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 및 시사점 해외 주요국의 의결권 행사·자문 원칙 등 규제 현황
개선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 기타 제도개선 필요사항 검토

- 동 T/F 논의를 통해 자산운용사가 책임 있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문화를 선도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의 제고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II. 주요 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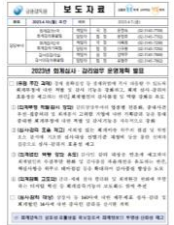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4.10 (월) 금융감독원

2023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 ▶ 금융감독원은 경제 불확실성 등 잠재위험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회계부정에 대한 적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심사·감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및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함
- ▶ 중점추진 과제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내용
가. 중대한 회계부정 적발 및 감시 기능 강화	
내용	① 회계리스크 증대 기업 등에 대한 감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분식 고위험 기업*에 대한 감시 충실화 - 횡령·배임 및 불공정거래 연루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중대 회계부정에 대해 집중감리와 엄중조치를 통한 대처 * 작은 최대주주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비적정, 사모CB 악용 기업 등
	② 업종별 전문화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회계부정 적발 기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위반 가능성·중요도가 높은 건을 우선 착수 처리 - 심사·감리기능 통합* 및 감리부서의 업종별 전문화를 통해 회계부정 적발 및 감리기능 강화 * 심사착수부터 최종 처리까지 일련의 단계로 집중적으로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감리 각 부서에서 심사·감리 조사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여 일괄처리
	③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하여 강화된 조치를 엄중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적 회계위반 등에 대하여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등 강화된 제재수단을 단호히 적용 - 내부회계관리제도 본격감리*를 통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한 회계기준 위반은 가중조치 * '22사업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23년부터 시행되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평가 보고 과정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점검

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사·감리의 효율성 제고

내용	①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 위주로 점검 및 예방 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테마로 선정된 회계이슈*는 이슈별 체크리스트 및 표준심사방안 마련 등을 통해 집중적·효율적으로 심사 * ① 수익인식, ②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③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 ④ 사업결합
	② 심사대상 선별기준 재정비 등을 통한 회계리스크 요인 적기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요소별 회계오류 적발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소 항목별 중요도를 조정하는 등 심사대상 선별기준을 재정비* - 회계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를 강화 * 위험요소별 선정비용 조정 등을 통해 시의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고, 선정건수 및 시기는 감리인력, 심사·감리처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③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효율화하여 회계오류의 신속 정정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경미한 회계오류는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고, 중대 위반혐의 적발 시 감리로 전환하여 가급적 1년 내 조사 종결 - 회계 오류사항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수정·공시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수정·보고에 대한 표준화된 처리지침 마련 추진

II. 주요 규제 동향

2023.4.10 (월) 금융감독원

2023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계속)

구분	내용
다.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회계법인 역량 강화 유도	
내용	① 감사인 감리 방식 효율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 감리는 등록요건 유지여부 등 핵심사항 위주로 점검하고, 이슈 적기 대응을 위한 테마점검을 강화 - 감리대상을 연초에 통지하여 회계법인의 수검부담 완화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감리 주기*는 시장영향력 및 품질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기본 3년으로 하되, 시장영향력이 큰 대형회계법인이나 품질관리수준 등이 낮은 회계법인 등은 감리인력 범위 내에 감리주기를 2년으로 단축
	② 새로운 감독제도의 안착을 통한 감사품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1월 최초 시행된 품질관리수준평가 제도를 일부 보완 - '23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제재 조치*와 관련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 등록요건별(18개)로 위반의 중요도에 따라 지정제외점수(각 20점~100점) 부과
	③ 회계법인의 공시 충실화 등을 통한 감사품질 중시 문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수시보고서 신속점검, 작성지침 안내, 공시·보고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자진정정 유도를 통해 공시 적정성 확보
라.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회계감독 고도화	
내용	① 업무 프로세스 지속 개선을 통한 피조사자 권익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 조사기간(원칙적 1년*) 명문화 및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개선사항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필요시 보완방안 마련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과태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치의 수용성 및 형평성 제고 방안 추진 *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감리를 중단한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하며, 금융감독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② 회계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디지털 전환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빅데이터 기술을 재무제표 심사·감리에 활용하기 위한 '회계심사·감리 디지털혁신 추진 실무 T/F'*를 지속 운영 - 회계분식 위험도의 정확도·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신뢰계검토모형** 고도화 추진 * 디지털 감리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관련 전산시스템 개선 방안 등 마련 ** 기업의 재무정보 등을 활용하여 회계분식 위험도를 분석하는 시스템
	③ 내부 인프라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감리역량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감리 역량 강화를 위해 회계아카데미 교육을 내실화*하고, 실무지침을 구체화하여 심사·감리매뉴얼 개정 추진 *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활용기법, 협의사항 발견기법, 문답요령 등 실무중심으로 편성

II. 주요 규제 동향

2023.4.10 (월) 금융감독원

2023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계속)

➢ 금융감독원은 2023년 상장법인 등 16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4사**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임

* 상장법인 및 비상장인 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회계기준 위반건수 및 위반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가군 2사, 나군 5사, 다군 7사. 22.8월말 기준 상장회사 등록감사인은 가군·나군·다군에 해당

구분	내용
가. 재무제표 심사·감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제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히 종결하고, 처리건수 보다는 중요사건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할 예정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 100사 내외로 선정 협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 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 50사 내외로 선정 <p>* ①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지적된 회사비율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 ② 감사인감리 결과 개별감사업무 미비점이 중요하거나 과도하게 발견된 회사</p> <p>**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p> <p>*** 자진 오류수정의 경우, 중요성 4배 이상 금액수정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p>

나. 감사인 감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4개 회계법인(가군 2사, 나군 5사, 다군 7사)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 - 3년 기준 감리주기가 도래한 10사를 우선 선정 후 시장규모와 품질관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4사를 추가 선정하고,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회계법인에 대하여 감리실시 일정 등을 사전통보 예정 																																														
	<표1> 감사인 감리 군별 구분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해당 군별 회계법인수</th> <th rowspan="2">'23년 계획</th> <th colspan="4">실적</th> </tr> <tr> <th>'20</th> <th>'21</th> <th>'22</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가군</td> <td>4</td> <td>2</td> <td>2</td> <td>2</td> <td>2</td> <td>6</td> </tr> <tr> <td>나군</td> <td>14</td> <td>5</td> <td>3</td> <td>4</td> <td>3</td> <td>10</td> </tr> <tr> <td>다군</td> <td>23</td> <td>7</td> <td>3</td> <td>5</td> <td>6</td> <td>14</td> </tr> <tr> <td>라군</td> <td>-</td> <td>-</td> <td>1</td> <td>2</td> <td>6</td> <td>9</td> </tr> <tr> <td>합계</td> <td>41</td> <td>14</td> <td>9</td> <td>13</td> <td>17</td> <td>39</td> </tr> </tbody> </table>	구분	해당 군별 회계법인수	'23년 계획	실적				'20	'21	'22	계	가군	4	2	2	2	2	6	나군	14	5	3	4	3	10	다군	23	7	3	5	6	14	라군	-	-	1	2	6	9	합계	41	14	9	13	17	39
구분	해당 군별 회계법인수				'23년 계획	실적																																									
		'20	'21	'22		계																																									
가군	4	2	2	2	2	6																																									
나군	14	5	3	4	3	10																																									
다군	23	7	3	5	6	14																																									
라군	-	-	1	2	6	9																																									
합계	41	14	9	13	17	39																																									

➢ 금번 중점추진과제는 실효적인 회계감독 및 사전예방적 감독강화를 통해 신뢰부감사법 시행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하고 회계 투명성 및 자본시장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취약부문 및 중대 회계부정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엄정조치함으로써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함
- 재무제표 심사제도 안착을 통해 신속한 수정공시를 유도하여 신뢰성있는 재무정보가 적시에 공시되게 함
- 사전예방 중심의 신감독제도 안착을 통해 자율적인 감사품질 경쟁을 유도하고, 사후적으로 감사인 감리시 핵심사항 위주로 이슈별 테마점검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감사품질 개선에 기여 함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4.5(수) 대한상공회의소

대기업집단 10곳 중 8곳, '최근 5년간 기업 공시부담 늘어나'

▶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의무 부담실태 및 개선과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각종 기업 공시의무*가 늘어나면서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기업 공시의무는 기업집단 현황 등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와 사업보고서 등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그리고 ESG 관련 공시의무 등을 의미함



- 81.6%의 기업들은 지난 5년간 공시부담이 '매우 증가'(29.0%) 또는 '다소 증가'(52.6%)했다고 응답함
 - 2020년 공정거래법에 국외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 공시의무가 각각 도입된 데 이어 2022년 하도급법에 하도급대금 공시의무가 신설되며 3개 신규 공시가 작년보다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공시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임
- 향후 공시부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73.7%의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응답했고,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1.8%에 불과함
 -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분기공시 항목을 연(年)공시로 전환하는 등의 공시부담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작년보다 시행되는 3개 신규 공시제도와 곧 도입이 예상되는 ESG 공시의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법인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의무 부과

- 가장 부담되는 공시의무로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31.6%), ▲기업집단현황 공시 (25.0%), ▲하도급대금 공시(14.5%) 순으로 나타남('자본시장법상 공시' 13.1%, '국외계열사 공시' 7.9%, 'ESG 공시' 7.9%)
- 제도 도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공시로 ▲하도급대금 공시(29.6%), ▲기업집단현황 공시(21.1%), ▲국외계열사 공시(12.7%)가 지목됨
- 공시제도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불필요한 항목 폐지 또는 단순화(37.8%), ▲유연한 제도운영(35.1%), ▲공시의무간 중복사항 통합(16.2%) 순으로 나타남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4.3 (월) 금융위원회

상장사의 공시정보, 2024년부터 영문으로도 제공됩니다.

▶ 2024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중요 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외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함

-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임
 - 규정 개정 내용: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는 ① 결산 관련 사항(예: 현금·현물배당 결정), ② 주요의사결정 사항(예: 유·무상증자 결정), ③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예: 주식 소각 결정) 발생 시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함
- 동 방안에 따르면 '대규모' 상장사,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가는 한편,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병행될 예정임
-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주요내용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내용
1단계 의무화 ('2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법인: ①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외국인지분율 5% 미만인 경우 제외) 또는 ②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 대상항목: 거래소 공시(주요경영사항 공시) 중 ①결산 관련 사항, ②법정공시 공통 사항, ③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공시시한: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
2단계 의무화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법인: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대상항목: 거래소 공시(1단계 + α) + 일부 법정공시(영문 요약본) 공시시한: 원칙적으로 국문공시와 동시에 제출하는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의무화 방안은 1단계 의무화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확정 예정
영문공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문공시 지원: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우대 혜택제공(예: 연부과금·상장수수료 면제) 부여, 전문 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교육 강화 등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영문 자동변화 확대, 국문 법정공시의 영문 검색기능 제공, 시기반 기계번역 활용방안 마련 등 <p>* 영문 KIND (거래소), 영문 DART (금융감독원)</p>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4.3 (월)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제보자들에게 포상금 1억 850만원 지급 실시

다운로드



QR 코드



➤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기여한 제보자 2명에게 총 1억 8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함

* 제보자 2명에게 각각 5,850만원, 5,000만원 포상금 지급

- 금번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모두 리딩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혐의자의 신원, 불공정거래 행위 양태 및 행위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보함*

*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일반에 공개된 자료 제외)를 제출한 최초의 제보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단기매매처의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표1>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제보 포상금 지급 실적

(단위: 만원)

지급년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포상금액	3,820	12,400	1,185	-	10,850

*포상 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임

- 특히 리딩방을 통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적극적인 제보를 요함
- 개인투자자에 대해 불법 리딩방 이용 시 손실 발생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크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3.31 (금) 금융감독원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되는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재무정보가 국제표준(XBRL)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 금융감독원은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 T/F(학계·유관기관·협회 등) 논의(23.3.9.)를 통해 국제표준(XBRL*)데이터의 재무공시 단계적 선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주요내용을 안내함

*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기업 재무정보 생성·보고·분석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무보고용 국제 표준 전산언어

- 금융감독원은 국제적 추세 부합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을 위해 XBRL 데이터 제공 범위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기업 재무제표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정보 비대칭성 해소 등을 위해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을 XBRL 데이터로 개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재무제표 본문(비금융업 상장사)만 XBRL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어 재무정보를 활용한 기업 재무분석이 제한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식 등이 실시간 공개*되기 어려움

* XBRL 재무제표는 계정과목명이 국문에서 영문으로 자동 변환되어 즉시 영문 공개 가능

- XBRL 재무공시 단계적 선진화 방안 요약(12월 결산 법인 예시)

대상기업		재무제표 본문		재무제표 주석		
		기존	'23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3분기보고서~ (23.11.14.까지 제출)	사업보고서~ (24년 3월 제출)	사업보고서~ (25년 3월 제출)	사업보고서~ (26년 3월 제출)
상장법인 (유가증권, 코스닥)	비금융업	의무 (현행)	새로운 XBRL 작성기 활용	의무화 (그룹 ①)	의무화 (그룹 ②)	의무화 (그룹 ③)
	금융업	-	의무화	시스템 개발 중('24년중 시행검토)		
비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 IFRS 적용 기업)	비금융업, 금융업	-	의무화			

※ 그룹 ①: 직전사업연도 개별자산총액 2조원 이상(150사, 21년말 결산 기준), 그룹 ②: 직전사업연도 개별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295사, 21년말 결산 기준), 그룹 ③: 직전사업연도 개별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1,789사, 21년말 결산 기준)

- 기대효과

구분	내용
투자자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분석 비용 절감 및 가치투자 기반 구축을 통한 정보의 비대칭성 개선 • 재무제표 주석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무 건전성 평가 질적 향상
기업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데이터에 내장된 연산기능을 통해 재무제표와 주석 간의 내용 불일치를 방지하는 등 재무정보의 정확도 향상
금융당국·회계법인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계기업, 산업리스크 등을 신속·정확하게 식별 및 감리 업무 효율화 도모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등을 통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전문화로 국내 회계투명성 제고

-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회계실무자/회계법인 등에 대한 XBRL 재무제표 작성 실무교육을 제공할 예정임
- T/F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25년 사업보고서 예정)에 대한 XBRL 주석 작성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임
- XBRL 재무제표 제출 관련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금융감독원 '전자문서제출요령'을 개정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3.30 (목) 금융위원회

FIU, 가상자산사업자 위법·부당 사례 공개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함

- FIU는 2022년 중 5대 원화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함
 - * 두나무(주), (주)빗썸코리아, (주)스트리미, (주)코빗, (주)코인원
 -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화하여 공개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강화하고자 함
 -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와 과태료(최대부과액 492백만원)를, 임직원 견책, 주의 등 조치요구를 부과하였으며, 3개월 이내 지적사항의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이행점검하여 개선이 미흡한 경우 추가 개선을 요구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표1> 주요 위법·부당 행위 예시

주요 유형	주요 검사 사례
비정상적 거래	• 고객 甲은 외부로부터 거래의 가상자산을 입고 받아 별도 매수 행위 없이 일방적 매도를 통해 현금화한 후 인출하는 비정상적 거래패턴을 지속 반복적으로 보임
차명의심 거래	• 고객 乙은 95세의 고령임에도 주로 새벽 시간에 거래하며, 자금세탁 의심을 회피하기 위해 99만원 이하로 분할거래함
내부통제 미흡	• 가상자산사업자 C의 임직원 丙은 배우자 명의의 계정으로 사업자 C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함

- 올해에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는 계속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코인마켓 사업자 및 지갑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하반기에는 5대 원화마켓 사업자의 현장검사 결과 토대의 차명의심 거래,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취업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 등을 계획됨
- 향후에도 검사 결과에 따른 주요 문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을 사전예방하여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질서를 확립할 예정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3.29 (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2월 결산 상장회사 선진국형 배당절차 관련 정관 채택 현황

➢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에서 발표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는 상장사 표준정관을 개정함(23.02.08)

- 12월 결산 상장회사 2,267개사(유가증권 780개사, 코스닥 1,487개사) 중 646개사 (28.5%)가 배당절차 개선방안 채택을 위해 개정 표준정관에 따라 정관을 정비함

<표1> 배당절차 개선방안 관련 '배당기준일' 정관정비 현황

(단위: 개사, %)

구분	유가증권			코스닥			합계		
	전체	이행가능	비율	전체	이행가능	비율	전체	이행가능	비율
대기업	199	66	33.2	42	13	31.0	241	79	32.8
중견기업	462	85	18.4	463	143	30.9	923	228	24.7
중소기업	83	13	15.7	952	302	31.7	1,036	315	30.4
금융·지주	36	22	61.1	30	2	6.7	67	24	35.8
합계	780	186	23.8	1,487	460	30.9	2,267	646	28.5

1) '23년 정기주총에서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한 회사와 2) 이번 상법 유권해석에 따라 기존 정관을 활용하여 배당절차 개선이 가능한 회사를 합산한 수치

- 대기업은 전체 241개사 중 79개사(32.8%), 금융·지주사는 전체 67개사 중 24개사(35.8%)가 배당절차를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모습을 보임

<표2> '배당기준일' 정관 정비 회사의 최근 3년 연속 배당 현황

(단위: 개사, %)

구분	유가증권			코스닥			합계		
	이행가능	3년 연속 배당사	비율	이행가능	3년 연속 배당사	비율	이행가능	3년 연속 배당사	비율
대기업	66	46	69.7	13	5	38.5	79	51	64.6
중견기업	85	49	57.6	143	68	47.6	228	117	51.5
중소기업	13	1	7.7	302	62	20.5	315	63	20.0
금융·지주	22	19	86.4	2	1	50.0	24	20	83.3
합계	186	115	61.8	460	136	29.6	646	251	38.9

- 배당절차 개선방안 채택을 위해 정관을 정비한 회사 중 대기업의 64.6%, 중견기업의 51.5%, 금융·지주사의 83.3%가 최근 3년 연속으로 결산배당을 실시함

-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배당절차 개선방안 채택 의지가 높다는 점에서 개선방안이 분기배당 절차 개선 관련 실효적일 것으로 기대되며, 선진국형 배당절차 채택 기업의 확산이 예상됨
- 자본시장법 개정(금융위원회에서 상반기 중 개정안 발의 예정)이 추가로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추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3.27 (월) 금융감독원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23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기준을 확인하여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하세요

➢ 금융감독원의 대형비상장사 약 1,190사*의 주기적 지정** 산정을 위해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함

-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해 대형비상장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22년 말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비상장주식회사 약 1,190사 (21년말 자산기준으로 22년 재무제표 확정 등에 따라 변동가능)

**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인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인 지정

-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함

* ①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5천억원 이상 등 대형비상장주식회사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③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 매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제출, 지정대상 선정일 이전 소유·경영 미분리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도 제출 필요(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월 14일까지)

다운로드



QR 코드



[참고] 대형비상장사 기준

직전사업연도 자산 총액 1천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②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회사
직전사업연도 자산 총액 5천억원 이상	① & ② 이외 비상장사

※ 개정(안)이 의결 공포전이지만 금융위원회 후속조치 (23.1.11. 증권선물위원회 보고)에 따라 '23년부터 적용

- 소유·경영 미분리 판단 관련 유의사항

구분	내용
지배주주가 개인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아님)로 재직 중이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지배주주가 법인①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전문경영인이 대표 이사로 재직 중이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지배주주가 법인②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1주 이상 보유하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함

- 금융감독원은 대형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3.15 (수) 한국거래소

최근 3년 부정거래 혐의통보종목 특징 및 유형 분석

-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유형 중 급증세를 보이고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특징과 유형을 분석함
- ▶ 최근 3년 부정거래 현황
 - 최근 3년간('20년~'22년) 시장감시위원회는 부정거래혐의로 총 55건을 금융위원회에 혐의통보함
 - 부정거래 혐의통보종목 55건은 유형에 따라 ① 새로운 인수인의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② 회사관련자의 부정거래, ③ 리딩방부정거래 그리고 ④기타로 분류됨

<표1> 유형별 혐의통보 실적

'20년	'21년	'22년	합계
23건	10건	22건	55건

-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관여한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기업사냥형, 회사관련자 유형)가 45건으로 81.8%를 차지함

<표2> 3개년 부정거래사건 유형

(단위: 건, %)

기업사냥형	회사관련자		리딩방		기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36	65.4	9	16.4	5	9.1	5	9.1

- ▶ 혐의통보종목 특징(내부자 관련 부정거래 45건 중 동일종목 사건이 2종목 포함되어, 총 43사대상 분석)

1. 재무구조 부실

- (영업실적 저조 및 자본잠식 우려)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채 증가와 손실 누적이 지속됨에 따라 자본잠식이 우려되어 계속기업 존속 여부 불확실

2. 지배구조 취약

-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고 변동이 빈번하여 안정적인 책임경영이 곤란
 - (낮은 최대주주 지분율) 혐의통보 된 43사의 혐의기간 종료일 기준 최대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14.1%로 상장사 평균*인 39.4%보다 낮은 수준
 - *'19~'21년 전체 상장사의 최대주주 지분율 평균
 - (잦은 최대주주 변경) 혐의통보 종목 중 39사(90.7%)에서 혐의기간 중 최대주주 변경이 발생하였고, 2회 이상 변동된 종목이 절반(26사, 60.5%) 이상

3. 테마성사업 신규 추진

- (사업목적 추가) 기존 주요사업과 연관적은 사업을 혐의기간 중 신규사업으로 추가한 종목은 41사(95.3%)
- (빈번한 타법인 출자) 32사(74.4%)가 65건의 타법인 주식·출자증권 취득을 공시하였고, 대부분(56건, 86.2%)이 투자 목적을 사업다각화로 공시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2023.3.15 (수) 한국거래소

최근 3년 부정거래 혐의통보종목 특징 및 유형 분석 (계속)

4. 대규모 자금유치 외관 형성

- 혐의통보 종목 대부분(42사)이 CB, BW 발행, 유상증자 등을 통한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 결정을 반복적으로 공시

<표3> 외부자금 조달 공시 현황*

구분	유상증자	CB,BW,EB	합계
조달규모	1조 600억원	2조 2,785억원	3조 3,385억원
조달회사 수	38사	41사	42사
조달횟수	133회	244회	377회

*최초 제출된 원공시 이후 공시가 정정 또는 취소되며 실제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사례가 빈발

- (발행 대상) 자본금이 소규모이고 실체파악이 어려운 비외감법인,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한 자금조달 공시가 전체의 70.2%* 차지
- * 비외감법인(1조 7,970억원, 53.8%), 투자조합(5,490억원, 16.4%)

5. 계속기업으로의 지속가능성 우려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력, 횡령·배임 발생,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이 의심
- (반복적인 불성실공시) 혐의종목 중 38사(86.4%)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26사는 2회 이상 지정됨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총 85건이 발생했고, 추가 상생을 견인하는 호재성 공시 관련 취소 또는 정정 등의 사유가 대부분(56건, 65.9%)을 차지

<표4>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주요내용

(단위: 건, %)

자금조달	단일판매공급계약	타법인 출자	최대주주변경관련	기타	합계
35(41.2)	14(16.5)	7(8.2)	14(16.5)	15(17.6)	85(100.0)

- (횡령·배임 사건) 혐의종목 중 18사(41.9%)에서 혐의기간 시작일 이후 대규모 횡령·배임사건이 37건 발생하였고, 규모는 총 3,909억원에 달함
- (외부감사의견 거절) 혐의종목 중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에서 모두 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15사에 불과하며, 28사에서 의견거절 또는 한정의견이 발견

<표5> 혐의통보종목 외부감사의견

(단위: 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적정	36	31	22
의견거절	6	10	19
한정	1	1	0
미제출	0	1	0

- (상장폐지 사유 발생)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로 혐의통보 된 43종목 중 34종목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중 12종목이 상장폐지됨

II. 주요 규제 동향

2023.3.15 (수) 한국거래소

최근 3년 부정거래 혐의통보종목 특징 및 유형 분석 (계속)

➤ 세부 혐의 유형

1. 지분공시 위반

- 부정거래 사건의 지분공시 위반은 대부분 무자본 M&A 인수인의 실체·자금력 은폐를 위해 발생
 - 인수인은 인수자금 조성 원천이 차입금이나 자기자금으로 허위 기재
 - 인수주식의 담보제공 사실을 누락하여 자금력있는 새로운 최대주주가 상장사를 인수하는 듯한 외관 형성
 -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의도적으로 공시하지 않고, 의무보유 등 제약 없이 단기간 내 매도 차익 실현

2. 호재성 재료 유포

- 부정거래 혐의위탁자군은 보유주식 고가매도 목적으로 호재성 공시·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
 -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 형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한 후, 정정 공시를 통해 규모를 축소·철회하거나 실제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사례가 빈발
 - 부정거래 사건에서 신사업 진출 관련 허위·과장성 공시 및 보도가 빈번하게 발견되며, 특히 최근에는 바이오 및 COVID-19 테마를 주가 부양 재료로 이용한 사건이 다수 발생

3. 자금유출

- 부정거래 과정에서 내부자 등 관계법인의 지분을 고가에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회수하지 않는 형태로 회사 보유현금 또는 신규 조달자금을 외부로 유출

➤ 혐의군 및 혐의규모

- 주요 혐의자는 새로운 인수인 및 기존 최대주주·임원 등으로 대부분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 확인됨
 - (투자조합) 최근 3년간 혐의통보 된 36건의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사건 중 투자조합이 인수인 또는 공동인수인인 사건은 17건으로 투자조합 관여사건이 상당수를 차지함
 - (혐의규모)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에는 기업인수부터 차익실현 단계까지 다수 인원 및 계좌가 동원됨(건당 평균 48인의 75개 계좌 동원/추정매매차익은 건당 평균 178억원)

➤ 시장감시위원회의 대응 경과

- (감시단계) 기업 부실화 징후 및 부정거래 패턴 확인 시 적출하는 시스템을 도입 및 운영 중임(21.4월~)
- (세부분석) 감시단계에서 적출된 의심 건의 분석을 위해 부정거래 혐의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중임(21.8월~)

➤ 투자자 유의사항

구분	내용
지배구조 취약 기업	• 최대주주 변경이 잦고 신규 인수인의 실체가 불분명 시 기업사냥형 부정거래가 빈발하므로, 투자 전 경영권 인수인의 정보와 인수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테마성 신규사업 추진 기업	• 유행성 사업 추진에 대한 공시 및 언론보도가 있는 기업의 경우, 신사업 추진의 사실 여부 및 이행 가능성을 검토 후 투자 필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기업	• 불성실공시법인은 부정거래 혐의자가 호재성 공시를 남발한 후 취소 또는 정정하여 지정된 경우가 빈번하므로 투자 유의

II. 주요 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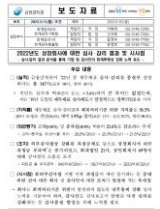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3.13 (월) 금융감독원

2022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 감리 결과 및 시사점

- ▶ 금융감독원이 2022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47사(표본 98사, 혐의 49사)임
 - 전년도 실적과 비교(5사 감소, 3.4% 감소)하여 큰 차이는 없었고, 이는 '19년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음을 시사함
- ▶ 재무제표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6.5%(83사 조치)로 전년(54.6%) 대비 1.9%p 상승(표본 심사·감리 35.7%(35사), 혐의 98.0%(48사))하였음
- ▶ 고의(9사, 10.8%) 및 중과실(9사, 10.8%) 비율이 21.6%로 감소하는 추세임*
 - * 고의+중과실 위반비율 추이 : 22사, 28.2%(20년) → 21사, 25.3%(21년) → 18사, 21.6%(22년)
- ▶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제도 등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증가하였고, 회계법인 21사, 공인회계사 69명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로 조치함
 - * 과징금 총 부과액 : 94.6억원(20년) → 159.7억원(21년) → 223.5억원(22년)
- ▶ new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한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조치가 엄정해지는 추세임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감사인도 감사보고서 발행 전 사전 심리를 강화하는 등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 최근 3년 간 심사·감리 상장회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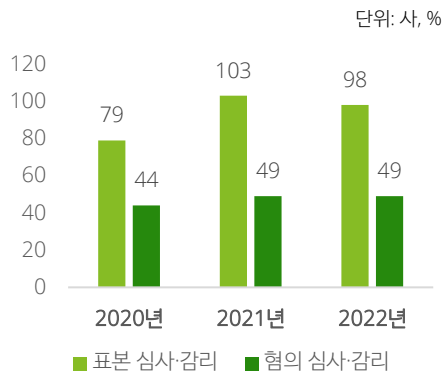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20년	'21년	'22년	'21년 대비	
				증감	증감률(%)
표본 심사·감리	79	103	98	△5	△4.9
혐의 심사·감리	44	49	49	-	-
합계	123	152	147	△5	△3.4



II. 주요 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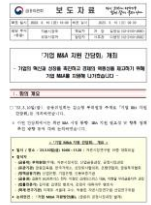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3.10 (금) 금융위원회

「기업 M&A 지원 간담회」 개최

- 3월 10일,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최근 M&A 시장 동향, M&A 지원 필요성 및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M&A가 크게 기업의 경영 효율화, 경제전반의 생산성 증대, 경기회복의 세 가지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안건 주요 내용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내용
1. 검토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인수·합병(이하 'M&A')은 기업의 성장·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중요 수단임 • 그간 PEF 제도 개선 등 기업 M&A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내 M&A 시장은 전반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시현함 * 국내 M&A 규모(조원): (13년)49.1→(15년)94.9→(17년)81.6→(19년)141.9→(21년)134.1 • 다만, 그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M&A 시장은 '22년 중순부터 침체 조짐을 보임 ⇒ 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M&A 지원방안을 강구
2. 기업 M&A 시장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 규모: '10년 이후 저금리 기조 하 지속 성장해왔으나, '22년에는 긴축기조·경기둔화 등에 따라 급속히 위축함 - 주요 투자자: 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 PE, 재무적투자자(SPAC 등)를 포함해 다양한 플레이어가 활동하며, 특히 PE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산업별 특성: 기술, 에너지, 산업재, 금융 등의 영역에서 활발한 M&A가 발생함 - ESG 강조: 최근에는 환경 등 ESG 관련 M&A가 빠르게 확대됨 •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 규모: 국제적 추세와 유사하게 M&A가 성장세를 보이다가 자금조달여건 악화 등에 따라 '22년 중 거래규모가 하락함 - 주요 투자자: 그간 PE 규제 완화 노력 등에 따라 PE 출자규모는 지속 확대되며 기업 M&A 시장의 주된 참여자로 정착함 - 산업별 특성: 기술·미디어, 제조, 소비자 등 중심의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향후 미래 신성장산업 중심의 M&A 수요로 지속할 전망이다 - 국경간 거래: 대형 딜 등에 따른 부침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 추세임
3. 기업 M&A 저해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층적 규제로 인해 M&A 시장 참여에 제약이 있음 • 기업 구조조정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자본시장 역할은 미흡함 • 새로운 산업 구조·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부재함 •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가 필요함
4. 향후 정책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정부는 ① 기업 M&A 규제 개선, ②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③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④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추진할 예정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3.2 (목) 금융감독원

2022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은 2022년 중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하여 총 88건*(65사)을 조치함 (조치건수는 전년과 유사(87건 → 88건))
 - * 발행공시 28건, 정기공시 35건, 주요사항공시 18건, 기타공시 7건
- 과징금 등 중조치가 22건(25.0%), 경고 등 경조치가 66건(75.0%)이며, 공시 유형별로 정기공시 위반(35건, 39.8%), 회사 유형별로 비상장법인(48사, 73.8%)의 조치 비중이 높음
- 2022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다운로드



QR 코드



분석 유형	내용
조치 유형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조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 조치 • 경조치: 투자자 수가 상당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 조치수준별 비중은 중조치 25.0%, 경조치 75.0%로 2020년 이후 유사한 수준 유지
공시 유형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공시 (35건, 39.8%): 정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중요사항 거짓 기재 등 • 발행공시 (28건, 31.8%): 비상장법인의 IPO 추진사례가 증가하며 주관사 실사 과정 등에서 과거 공모위반 사례 다수 발견 등의 이유에 기인 • 주요사항공시 (18건, 20.4%): 증권발행결정에 대한 미공시·지연공시 및 주요약정 기재누락이 다수
회사 유형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대상회사 총 65사 중 비상장법인 비중(48사, 73.8%)이 높았으며, 상장법인*(17사, 26.2%)은 대부분이 코스닥 법인(15사, 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닥(15사), 코넥스(2사) 등 총 17사 • 상장: 상장법인의 비율은 26.2%로 '1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 • 비상장: 비상장법인의 비율은 73.8%로 '1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장법인은 정기공시 위반이 가장 큰 비중(32건, 45.1%)을 차지하였고, 발행공시(26건, 36.6%), 주요사항공시(13건, 18.3%) 위반도 다수 발생

- 향후 금융감독원은 실효성 있는 공시조사를 통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안내를 강화할 예정임
 - 2023년에도 전환사채 관련 중요사항 기재누락·거짓기재, 정기공시위반 등을 집중조사하여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임
 - 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상장법인 대상 공시설명회 및 비상장법인 대상 공시의무 교육·홍보를 통해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2.27 (월) 금융감독원

내년부터 배당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지급하려면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 2024년부터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 절차를 변경하려는 상장회사는 금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의결권기준일과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함
- 개정 관련 주요 내용

다운로드



구분	내용
배당절차 개선 방안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배당 절차 개선방안*' 발표 * 기업지배구조발전센터 Newsletter 2월호 II. 주요 규제 동향 -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참고
상장사 정관 개정 필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하게 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 • 중간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 * 분기배당 기준일을 배당 결정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개정 예정 (현재는 배당기준일을 분기말로 확정)
정관 개정 시 정기보고서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정관 개정 시에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2023년 1분기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에 관한 사항: 배당기준일 지정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 변경이유 등 기재 (I. 회사의 개요 - 5. 정관에 관한 사항) ✓ 배당에 관한 사항: 향후 투자자가 배당여부 및 금액을 확인한 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변경한 사실을 기재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6. 배당에 관한 사항)

QR 코드



- 향후 금융감독원,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는 상장회사의 정관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 교육·홍보를 지속하고, 투자자들이 변경된 배당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II. 주요 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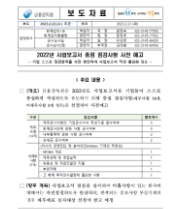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2.22 (수) 금융감독원

2022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 ▶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사업보고서의 공시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재무사항 14개, 비재무사항 5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함
- ▶ 재무사항에 관한 중점 점검사항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내용
1.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점검결과에 따른 부실기재 우려 항목 등을 위주로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요약(연결)재무정보 ② 재무제표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③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④ 재고자산 현황 ⑤ 수주현황 등 항목 작성기준 준수 여부
2.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감사항목 등과 같이 감사보고서에만 기재하고 사업보고서 본문에는 누락한 사례가 많은 항목 등을 위주로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등 ② 감사보수 및 시간 등 ③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④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⑤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항목 공시 여부
3.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여 감독업무에 활용하고, 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등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 공시 여부
4. 상세표 공시여부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속회사 및 타법인 출자현황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② 타법인 출자현황(상세)의 공시 여부

- ▶ 비재무사항에 관한 중점 점검사항

구분	내용
1. MD&A 개요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전반적인 현황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다른 항목의 핵심내용 요약 기재 여부 및 ROE, EBITDA 등 성과평가기 사용하는 경영지표가 있는 경우 그 의미와 추이, 원인 등의 기재 여부 • 사업보고서상 다른 본문을 단순 참조하라고만 기술하거나, 현황과 무관한 홍보성 내용이 나열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II. 주요 규제 동향

2023.2.22 (수) 금융감독원

(계속) 2022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구분	내용
2.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의 영업성과와 미래위험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도록 그 현황과 변동원인,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결과의 기재 여부 재무사항 분석 시 관련 표를 삽입하여 변동추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순 수치의 증감이나 일부 원인만 단편적으로 서술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3. 유동성 및 자금조달·지출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의 단기 생존성과 재무 안정성 등이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도록 향후 유동성과 자금조달 및 지출 구조의 변동 개연성과 유사시 대비책 등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여부 유동성 및 자금조달·지출의 단순 현황만 적시함으로써 투자자가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
4. 부외거래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제표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숨어있는 잠재위험이 제대로 보여질 수 있도록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거래규모, 회사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여부 부외거래가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판단근거, 대책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5.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의 회계 및 추정 등의 정책 변화와 법률·규제환경 변화 등의 기재 여부 기존 서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재무나 영업, 유동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등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 향후 2023년 4~5월 중에는 FY2022 사업보고서 점검을 실시하고, 5~6월 중 미흡사항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되, 반복되는 중요사항 부실기재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할 예정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2.15 (수) 전국경제인연합회

매출 500대 기업 조사 2023 ESG 경영 트렌드

-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서 매출액 500대 기업 ESG 실무자를 대상(100개사 응답)으로 「2023 ESG 트렌드」를 조사함
- ▶ 2023년 ESG 경영 규모는 작년보다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응답자의 93.0%가 2023년에 ESG 사업 규모를 작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전경련은 이러한 배경을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공감대 확산과 사업구조 전환을 통한 ESG 경영 환경의 정착으로 분석함
- ▶ 실무 주요이슈는 환경(82%)이 가장 높으며, 지배구조와 사회는 각각 9%를 차지함
 - 지배구조 분야 주요이슈로는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강화(38.5%), ESG 정보공시·평가 대응(28.0%), ESG위원회 운영 실효성 확보(16.8%), 이사회 전문성·다양성 확보(16.1%) 등이 선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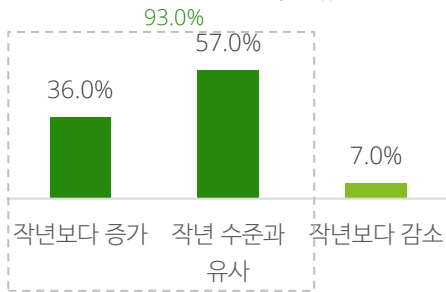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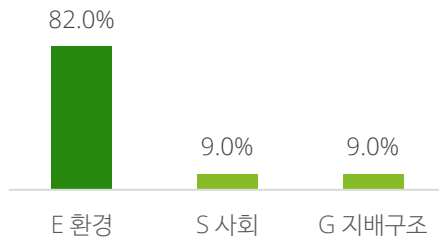
QR 코드



< 2023년 ESG 사업 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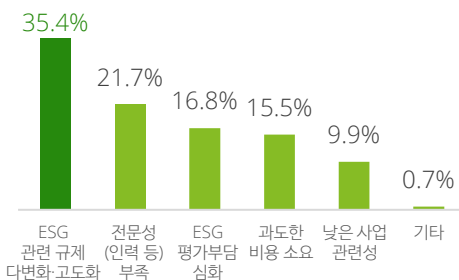


< ESG 중 2023년 중요 이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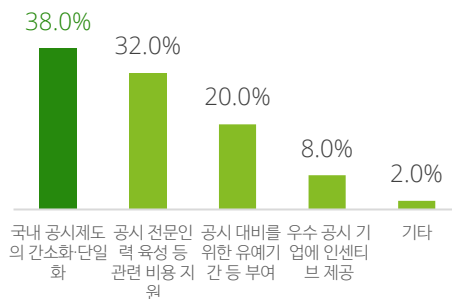


- ▶ 평가업체마다 다른 평가결과로 인한 예측가능성 저하가 ESG 평가 대응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고됨
- ▶ ESG 정보공시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으로는 국내공시제도 간소화 및 단일화(38.0%)가 최우선 사항으로 선정됨

< ESG경영 추진 애로사항 >



< ESG 정보공시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2.14 (화)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 자문위원회 확대 개편

- 회계기준원은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논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 받기 위해 2022년 4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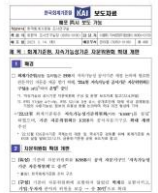
 - *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도자료 참고 ('22.4.29)
 - ** IFRS S1(일반 요구사항), IFRS S2(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에 대해 국내 경영환경, 기업의 수용가능성, 정보의 유용성 등을 논의하며 국내 의견 형성에 기여
- 2022년 12월 회계기준원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를 설립*하였으며, 기존 자문위원회를 KSSB의 공식자문기구로 확대 개편을 추진함

 - * '22.12 ESG공시기준 국제논의 대응 및 국내기준 검토를 위해 회계기준원 내 KSSB 설립 발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Brief 1월호](#) II. 주요 규제 동향 - 「유관기관 합동으로 ESG 공시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참고
- 기존의 자문위원회를 KSSB의 공식 자문기구인 '지속가능성기준 자문위원회'로 승격시키고, 기존의 자문위원회에 포함하지 않았던 학계를 포함시켜 기업·투자자 분야의 위원을 보강하여 총 20인*으로 확대함

 - * 기업 6인, 투자자 4인, 학계 3인, 전문법인 3인, 유관기관 4인(위원장 포함)
- 다음을 포함하여 KSSB 업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임

 - ISSB 공시기준 관련 정규절차문서(예: 공개초안, 토론서, 정보요청서) 검토
 - ISSB 공시기준의 번역안 검토
 - 국내에 적용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안)에 대한 검토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과제의 발굴
- 연 3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내에 부문별 소위원회(예. 기업법, 투자자별)를 구성하여 부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임
- 향후 KSSB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제 정합성과 국내 경제·산업 환경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데 자문위원회의 자문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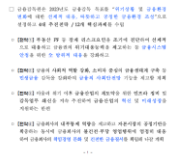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2.7 (화) 금융감독원

2023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 ▶ 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12개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그 중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공정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불건전·부당 영업행위에 엄정히 대응하여 책임경영 문화 및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 2023년 핵심과제 中 금융회사 책임경영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관련 사항

다운로드



추진과제	조치사항
금융회사 책임 경영 관행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합리적으로 작동되도록 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및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 지주 사외이사가 주요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규 선임 사외이사 대상 워크숍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제고 <p>* 이사회 운영, 그룹 리스크 통제 및 내부통제체계 등</p> • 금융회사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책임경영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감사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시정처리 이행현황 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부감사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여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금융사고에 대한 적시대응체계* 마련 <p>* 일정규모 이상 거래 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즉시 현장점검 실시 등</p>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량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 경영권 시장 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취지는 살리되, 공시의무자 부담 경감·규제 수용성 제고를 위한 세부 운영 기준 마련 ✓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경영권 변경 시 일반주주 보호방안 도입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및 세부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 •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및 회계법인 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부정 위험요소별 회계오류 적발률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회계심사 대상 선정기준(항목 수, 중요도 등) 재정비 ✓ 중대한 회계위반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본격 실시하고 회계분석 가담·조력 기업 등은 수사·세무당국 등 적극 통보 <p>* FY23: 자산 2조원 이상 → FY23: 5천억원~2조원 → FY24: 1천억원~5천억원</p>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평가 등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신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감독 강화 <p>예)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평가 결과를 감사인 지정 등과 연계,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의무 위반시 지정제외 점수 부과</p> ✓ 중소기업의 감사부담 경감을 위해 소규모 기업용 회계감사기준 제정을 지원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실무가이드 및 모범사례 마련

QR 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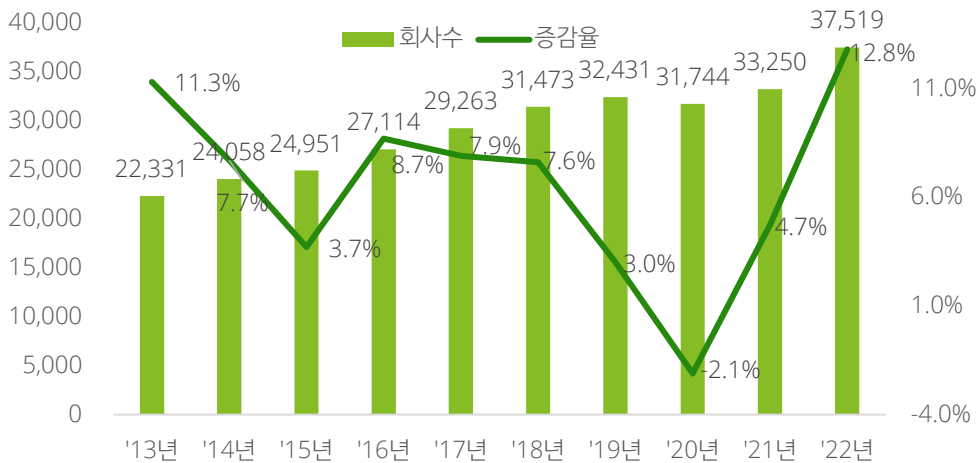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2.1 (수) 금융감독원

2022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 2022년말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7,519사로 전년(33,250사) 대비 4,269사(12.8%) 증가함
- 2022년은 코로나 팬데믹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부채가 증가하여 외부감사 기준을 충족한 회사가 급증함에 따라 전년대비 최근 10년 간 평균증가율(5.5%)의 2배 수준인 12.8% 증가함
- 최근 10년 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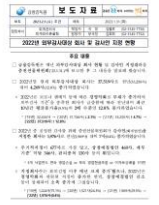
- 2022년 중 공정한 감사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는 1,976사로 전년(1,969사) 대비 7사 증가(0.4%)하였음

- 주기적지정 677사, 상장예정법인 460사, 재무기준 미달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부의 영업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 1 미만) 346사, 관리종목 130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증감요인

	요인	내용
증가	재무기준 미달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재무상황이 악화된 회사 증가
	감사인 미선임	• 외부감사 대상 증가와 감사계약 체결기한 내 미체결 회사 증가
	선임절차 위반	• 감사인선임위원회 점검대상 증가와 선임절차 위반에 대한 엄격한 적용 전년대비 감소
감소	관리종목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의 지정기간(3~4년) 종료와 재무기준 미달 등 신규 지정사유 발생에 따른 대표 지정사유 변경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경	• 지정사유 시행 이후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자주 변경된 회사 감소
	부채비율 과다	• '22 사업연도부터 부채비율 지정 사유 폐지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31 (화) 금융위원회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

- ▶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2가지 과제를 시행할 것을 제시함
 -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하여 안내하고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여부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기업들이 개선된 배당절차를 자발적으로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임
- ▶ 개선 방안

다운로드



QR 코드



별첨



	현황	개선
결산배당 (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 기업은 결산기 말일 주주를 배당받을 주주로 확정하나, 배당여부와 배당액은 그 다음해 3월 개최되는 정기주총에서 결정됨 •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시점(배당기준일)에는 배당액 등 정보를 알 수 없어 배당 관련 예측이 어려운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주주총회에서 배당여부·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
상장회사 분기배당 (자본시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는 상장회사의 경우 3, 6, 9월 말일의 주주(배당기준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 (배당액 확정)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先 배당기준일, 後 배당액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배당 절차도 先 배당액 확정, 後 배당기준일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23년 상반기 중 개정안 발의) ✓ 3, 6, 9월 말일의 주주를 배당받을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음 ✓ 이사회 배당결의 이후를 배당기준일로 정할 경우, 배당금지급 준비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지급기간은 20 → 30일로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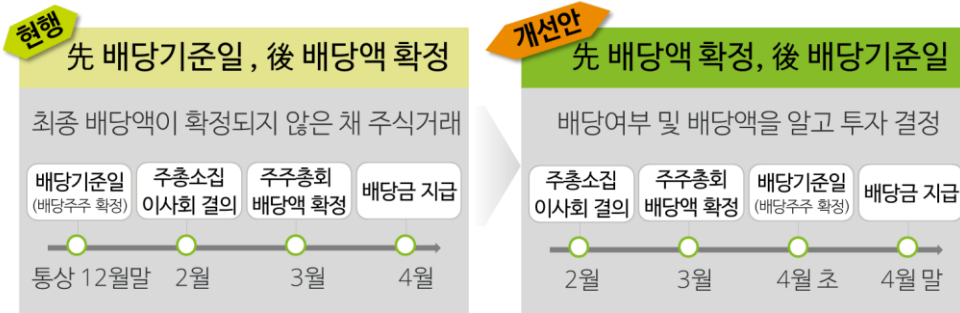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31 (화) 금융위원회

(계속)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

▶ 금융위원회가 제시하는 배당제도 개선안



▶ 관행개선 방안 중 중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관련 내용

- 2024년부터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임 (가이드라인은 '24년 1분기 중 개정 후 배포 계획)
- 지배구조 핵심지표에 '배당절차 개선여부'를 신설하여 개선여부가 O·X로 공시되도록 하고, 구체적인 배당정책과 결정과정도 투명하게 공개 예정임

▶ 기대효과

- 글로벌 투자자의 자금유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며, 배당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확대로 이어져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배당성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임
- 한국 증권시장의 낮은 배당성향이 점차 개선되어 자본시장을 통한 지속적인 현금흐름(소득) 창출이 가능해지면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되어 증권시장변동성도 완화될 것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30 (월) 금융위원회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 ▶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당면현안인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물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12대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 2023년 업무 추진과제 中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사항

다운로드



QR 코드



별첨



추진과제	조치사항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ID제도 폐지 및 통합계좌 활성화 등 외국인 투자편의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투자내역 보고의무 폐지, 장외거래 사후보고 범위 확대 상장사에 대한 영문공시제도 단계적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업: ('24년) 자산 10조원 이상 → ('26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 공시내용: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
상장기업 경영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주친화적인 배당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당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배당액 결정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법 개정 ✓ (관행) 개선방안을 상장회사협의회 등 표준정관에 반영, 개선여부를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자사주 취득·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 강화, 과징금 상향 등 대량 보유보고의무(5% 룰)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여 일반주주 권익 제고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등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영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튜어드십코드에 ESG 요소 반영, 주주활동 공시 강화 등
자금조달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펀드 수수료·보수체계 합리화, 수익률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방안 마련 개인 채권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A비과세 혜택대상 상품에 회사채 및 K-OTC 시장내 비상장주식 등 포함 ✓ 고위험·고수익 채권(BBB+이하) 등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제공 등

- ▶ 추진과제 조치사항 및 시행 일정

주요 정책 과제	조치사항	시행시기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자본법 시행령 개정	3분기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	자본시장법 개정	-
자사주 취득·처분 공시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 발표	4분기
대량보유보고의무(5%룰) 위반시 과징금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	-
기관투자자 책임투자 활성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	연중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 방안 마련	방안 발표	연중
개인 채권투자 활성화	조특법 개정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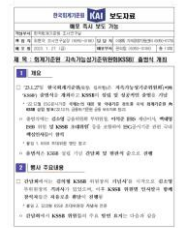
2023.1.27 (금)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출범식 개최

- ▶ 한국회계기준원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 출범식을 개최함
- ▶ 간담회 주요 발언

발언자	주요 발언
김의형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성 공시를 발판으로 국내 기업이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과제는 사업모델의 변경과 혁신 • 한국회계기준원·KSSB는 공시기준 제정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기업의 산업적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도 수행
박세환 상임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넓은 이해관계자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이 KSSB의 중요한 역할 •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 요청
우태희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ESG 공시에 대한 기업의 전반적인 의견은 기대 반 우려 반 • 향후 KSSB는 ESG 공시 현안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해주는 창구 역할
임재준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 시 ESG 정보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면서도 기업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
이병래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에 관한 국제적인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필수적 •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
백복현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워싱 문제 해결과 보다 신뢰할 만한 공시기준 정립을 위한 노력 • 공시기준이 가지는 정교함과 기업이 할 수 있는 자율성의 적절한 조화 필요
조윤남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정보가 넘쳐나는 홍수 속 공시기준 마련은 기업들에게 규제가 아닌 지원책으로서의 작업

다운로드



QR 코드



- ▶ 향후 계획
 - KSSB는 2023년 2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도 착수할 예정임

II. 주요 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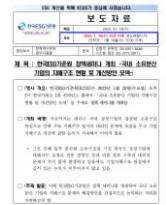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18(수) 한국ESG기준원

한국ESG기준원 정책세미나 개최 - 국내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

- 현재까지 대다수 국내 상장기업의 집중된 소유구조 특성으로 인해 주로 지배주주 일가의 대리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논의가 지속해서 이어져 왔음
- 이로 인해 일부 분산된 소유구조를 가진 대규모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문 경영인 등에 의한 참호 구축과 대리인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내 소유분산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다음과 같이 발표함
 - 1) 의결권 행사를 포함하여 외부 일반 주주가 적극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 2) 기업 내부적으로는 전문 경영인의 선임과 연임 절차를 엄격하게 감시·감독하는 규율 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제안함
- 「국내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발표에 대한 주요 내용
 - 소유구조 특성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분석 관점이 달라짐
 - ✓ 집중된 소유구조에서는 지배주주, 분산된 소유구조에서는 경영자가 대리인
 - 대리인으로서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차이
 - ✓ 지배주주에 대비하여 경영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으며, 주로 부적절하게 참호를 구축하는 대리인 문제(entrenchment)를 초래
 - 경영자가 대리인인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
 - ✓ 외부 일반주주(특히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등 주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장 제도적 환경을 조성
 - ✓ 이들의 적극적인 주주권(active ownership)이 의결권이 없는 경영자에게 실효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 기업 내부에서 CEO(또는 회장)의 선임 및 연임 절차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제한하는 규율 체계가 정립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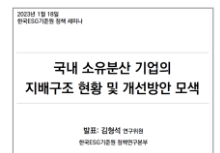
다운로드



QR 코드



별첨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 지배구조 구조적 문제와 해결방안' E.S.G 포럼 개최 [라이프인]
- 당국 지배구조 정조준에도... 5대 금융 사외이사 75% 연임 [서울파이낸스]
- 기업의 지배구조 이슈, 소비자 구매 결정에 가장 큰 영향 끼쳐 [데일리팝]
- 코리아 디스카운트... 후진적 주주환원, 기업지배구조가 원인 [중소기업투데이]
- 행동주의 주타깃은 지배구조... 기업들 차등의결권 절실 [매일경제]
- 철강 지우는 철강업계, 지배구조 전환 확산... 미래전략 수립 [신아일보]
- '지배구조 개선·주주환원' 마지막 퍼즐 맞춘다 [더벨]
- 블록체인 기반, 자율적 지배구조 기업이 뜬다... 제약업계 DAO 주목 [스타트업투데이]
- 채권형 펀드에도 녹아든 ESG... 'G'에 집중 [연합인포맥스]
- EU사업집행위원 "ESG실사 발효까지 4~5년...5월 한·EU 정상회담" [연합뉴스]
- 주주권의 보호로 첫발 댄 지배구조 개선 [더벨]
- 외풍에 몸살난 포스코·KT, 지배구조 개선으로 한계 돌파하나 [이뉴스투데이]
- 지분구조도 정점 선 오너들... 이사회도 직접 장악 [더벨]
- 공짜 점심 없다... 지배구조 청구서 매년 커진다 [더벨]
- ESG평가원, "1분기 ESG 경영, SK·삼성전자·KB금융 순" [한국경제TV]



이사회·감사위원회

- 3년 장기호흡 이사회, 사외이사 견제기능 글썩 [더벨]
- 감사위원회포럼, '자금 사고 유의사항' 주제로 첫 번째 정기포럼 개최 [뉴스1]
- 주총 반대표 행사 4%뿐 ... 금융당국,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착수 [비즈와치]
- 이사회 의사록으로 본 사외이사의 중요성 [더벨]
-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규제 동향과 전망 [한불상공회의소]
- 출범 2년째 ESG위원회, 높아진 이사회 내 존재감 [더벨]
- 2023년 정기주총 리뷰, 3대 키워드는... 주주제안·소유분산·E&S [녹색경제신문]
- 주주제안 막아라... 꼼수로 방어하는 상장사 [비즈니스와치]
- 업무시간 늘어나는 금융지주 이사회... 다양성 강화도 대비 [연합인포맥스]
- '3%룰' 이 뭐길래... 표대결 앞둔 남양유업·BYC·광주신세계에 영향 예상 [조선비즈]
- 식자재업계, 주총 통해 신사업 강화·이사회 정비 [시사오늘]
- 경영진 두고 표대결 펼친 바이오 업체들, 각사각색 [팜이데일리]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 몰입형 가상세계, 내년 1055兆 시장 될 것, 딜로이트 '테크트렌드' 발간 [머니투데이]
- '2.4조 메디트 M&A' 존재감 뽐낸 딜로이트 안진 [더벨]
- 딜로이트 안진, 회계업계 첫 'XBRL 센터' 개소 [뉴시스]
-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통합 부동산 자산 운용 및 관리' 공동 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 딜로이트 안진, 국내 최초 자금사고 이상징후 탐지 솔루션 '라이트하우스' 출시 [조선비즈]
- 딜로이트 안진, '공급망 ESG 아카데미' 교육 진행 [머니투데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디지털 기술, 스포츠 산업 미래 열쇠... 경기력·고객경험·수익 강화 OK" [아주경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스포츠 산업 디지털 전환의 방향 제시 [파이낸셜뉴스]
- 딜소싱에 진심, 딜로이트 안진, 전문 프로그램 '모닝피치' 론칭 [더벨]
- '신뢰 구축엔 ESG, 30개국 이사진 61% 답해' 한국 딜로이트 그룹 조사 [바이라인네트워크]
- 한국 딜로이트, 여성의 날 맞아 ESG 북캠페인 [매일경제]
- 파스토·딜로이트 안진, 풀필먼트 전국 확대 위해 맞손 [머니투데이]
- 메디트·HMM 고난도 빅딜 'IB 베테랑' 활약 [서울경제]
- 신한은행, 딜로이트 안진과 업무협약... IB·기업승계 자문서비스 강화 [한국아이닷컴]
- 분쟁해결 핵심은 증거, 증거력 있는 기록 확보가 성패 좌우 [리걸타임즈]
- 딜로이트컨설팅·BSI코리아, 'AI거버넌스 구축' MOU [머니투데이]



회계투명성

- 기업이 甲, 회계법인 乙... 한국판 언론 사태 도돌이표 [이코노미스트]
- 가상자산 거래소, 불법상장피·깜깜이 상장에 신뢰 흔들 [스트레이트뉴스]
- 한국거래소, 코스닥·코넥스 상장사 대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컨설팅 실시 [MTN뉴스]
- 지출보고서 작성 원칙, '주체·대상·시기'.. 경제적 이익은 모두 기입 [메디파나]
- 하반기 재무공시 강화... 주주행동주의 시즌2 대비해야 [이데일리]
- 핵슬란트-브릿지코드, 가상자산 세무회계 기능 개발 위한 MOU 체결 [데일리포스트]
- 금융위원회, 'ESG 평가 신뢰성·투명성 제고 필요, 내부통제기준 마련하고 평가기준 공개해야' [아주경제]
- 간편결제 수수료 관련 정보 공시... 수수료 투명성 제고 [한국경제]
- 한국공인회계사회, 오는 27일 '제3회 ESG 인증 포럼' 개최 [세정일보]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방지

- 횡령 막아라, 상장사, 내부회계관리 '비적정' 감소세... 16곳 환기종목 [뉴스1]
- 회계·IT 융합 솔루션 첫 개발... 기업 횡령사고 막는다 [이데일리]
- 챗GPT 못지않다... 횡령을 사전에 탐지하는 첨단 기법들 [매거진한경]
- 사이버 보안, 만능 솔루션 없다... 신속 대응뿐 [매경이코노미]
- 직판 운용사 횡령 막자... 예탁금 계좌관리 강화 [대한금융신문]
- 금융그룹 외부 감사 맡은 회계법인들, 충당금 정조준 [데일리안]
- 경영진 감독의무, 법에 명시... 사외이사 역할 강화 추진 [한국경제]
- 감사인연합회, 6월 7일 'SI 발전과 데이터 감사' 포럼 연다 [세정일보]
- 지난해 금융회사 사고금액 1100억원... 횡령만 814억 [시사저널]
- 금감원, 기업은행 직원 횡령 현장조사 완료... 내부통제 총체적 부실 [조선비즈]
- 반복되는 코인거래소 해킹... 크립토편 도입 논의 수면 위로 [전자신문]



규제 동향

- '대형 비상장사 기준 1천억 → 5천억' 외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한국세정신문]
- 자산 5천억 미만 비상장사들, 신외감법 부담 완화된다 [뉴시스]
- 대형비상장사, 정기총회 후 지배주주 주식 현황 제출해야 [일간NTN]
- 장부 잘못 쓴 상장사 평균 과징금 16억... 전년比 40% 급증 [대한경제]
- 금감원, 올해 160개 상장사 고강도 감리... 회계부정 적발·감시기능 강화한다 [세정일보]
- 기업 부담만 키운 신외감법.. "4년간 감사보수 84.1% 올랐지만 품질 미미 [아시아경제]
- 금감원,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회계법인외부검증 가이드스 제정 [일간NTN]
- 금감원, 올 3분기부터 비상장사도 XBRL 재무공시 의무화 [세정신문]
- 이복현 금감원장, 생체정보 활용한 금융거래 적극 지원 [경향신문]
- '2023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법률신문]
- 신외감법 시행 뒤 회계처리 과징금 작년부턴 대폭 증가 [한국경제]
- IPO 성공한 VC, 실패한 AC... 성패 가른 변수는 금감원 잣대 [인베스트조선]
- 공익법인, 국세청 지정 감사인의 회계감사 안 받으면 가산세 문다 [세정신문]
- 금융위 상호금융권 부동산PF 점검, 대손충당금 늘린다 [비즈니스포스트]
- 금감원, 은행 지배구조·내부통제에 칼 댄다 [비즈니스와치]
- 금감원, '22년 중 외감대상 신규 편입사 감사인 선임 지원 길라잡이 배포 [세정일보]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M&A

- 오스텀·SM엔터, 공개매수 돋보인 1분기 M&A 시장... 메디트 매각한 씨티증권 1위 [인베스트조선]
- 글로벌 소비재 M&A는... 니치 향수·건강 스낵·수제 맥주·와이너리 [매일경제]
- 사모펀드 지방금융 공동 인수설 실현 가능성은 [더벨]
- 글로벌 14조 바이오 M&A 터졌다... MSD, 자가면역 질환 기업 인수 [머니투데이]
- M&A·투자 통해 사업다각화 모색하는 국내 제약업계 [메디칼업저버]
- 1분기 딜 26조, 다시 뛰는 M&A 시장... 자금 다시 돈다 [머니투데이]
- 돌아온 M&A 청구서, 카카오·롯데쇼핑 등 수천억원대 영업권 손상 [한국경제]
- 5대 금융지주, 내부 정비 끝내고 M&A로... 증권·보험사 인수 시동 [조선비즈]
- 韓日 대기업, PEF와 공동투자... M&A 시장 온기 [서울경제]
- SM 수장 된 M&A 전문가,자회사 매각 본격화할까 [조선비즈]
- M&A의 새 공식 오너 리스크 [더벨]
- 불어나는 회생기업... M&A시장 판 커진다 [이데일리]
- 올 M&A 투자 키워드 韓日 고령화, 中내수 [매일경제]
- 초강수 둔 글로벌 제약사들 구조조정 속도.. M&A로 활로 모색 [조선비즈]
- M&A·사업확장에 간판 바꾸는 기업들 [이투데이]
- 카카오페이, 곳곳에 쌓인 IPO 자금... 국내 M&A 모색 [더벨]
- VR 시장 시들하지만... 글로벌 빅테크는 M&A 군침 [이코노미스트]
- 인력 쟁탈전, 글로벌 M&A 부티크, 국내 공략 경쟁 불붙었다 [더벨]
- 얼어붙은 회수시장 녹여라... M&A 펀드 신주 투자 의무 폐지 [머니투데이]

IV. FAQ

1. 내부감사 감독 수행을 위한 업무에는 무엇이 있나요?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나요?

▶ 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내부감사부서의 감독 업무를 권고함

-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권 및 평가권한 보유
- 내부감사부서의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 평가
- 내부감사부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 이사회에 보고 후 사후조치 이행
-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 및 구성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감독
-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와 구성원이 감사활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장치 요청
-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이 관련 지식, 경험, 전문적 자격을 갖추도록 함
- 내부감사부서가 적절한 수의 인원을 확보하도록 함

-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감독
 -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임면권(또는 임면 동의권)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내부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신분보장방안을 마련할 것이 권고됨
- 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 감독
 - 세계내부감사인협회(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IIA)의 국제내부감사기준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 완수를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그 외의 능력을 총체적으로 소유 또는 취득할 것을 권고함
- 내부감사부서의 활동 감독

내부감사계획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기반 감사계획, 감사대상 및 범위, 자원계획 및 예산수립, 연간업무일정수립 등을 고려해야 함
내부감사보고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감사의 결과 • 주요 리스크, 통제 이슈 및 경영진의 리스크 수용 • 이슈해결을 위한 개선 권고사항 • 수용되거나 실행된 권고사항의 퍼센티지 •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내용 및 조치상태 • 조치 이행 책임자 • 최고감사책임자가 판단함에 있어 조직이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대응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최소한 연 1회 이상 내부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다음사항이 포함될 수 있음

- 재무제표 관련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과 이 사항이 기술된 방법
- 외부감사 과정의 효과성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외부감사인인 선임 또는 재선임에 대한 제안
- 이사회가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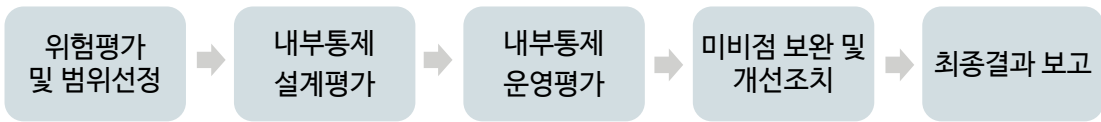
* 한국ESG기준원(구 기업지배구조원),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2018.05 ** 한국ESG기준원(구 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2021.08
 ***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위한 실무지침서」, 2003.07 **** IIA, 「국제내부감사기준」, *****2017, IIA, 「적용지침」, 2017
 *****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ESG기준원, 삼정KPMG, 「감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2020

IV. FAQ

2.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간 평가계획을 보고받아야 하나요? 평가계획의 적정성 검토 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기능을 수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지원해야 함(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93)
 -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계획에서부터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경영진이 수행한 절차의 전반을 감독함으로써 독립적인 평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모범규준 등 적용 FAQ, Q42)
 - (경영진의) 위험평가에 기반한 핵심통제 선정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계획은 일정한 형식에 따라 문서화되고 감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확정되어야 함(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88)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외부감사인이 수립한 연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감사)계획을 보고 받아야 하며, 평가계획의 적정성과 자원의 충분성을 검토하여 감사위원회의 연간 감독 및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함(그림1)

<그림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주요 절차



- 평가기간의 위험평가 결과를 포함한 평가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함(당기 조치 계획 및 결과, 평가 기간, 평가자, 평가 대상과 방식의 적정성 포함)
- 일반적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경영진은 1~2분기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부 계획은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는 감사 일정에 맞춰 운영 및 평가 일정이 고려되어야 함
-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8, 88)

- 위험평가에 기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계획 보고 문서
- 중간평가 및 기말평가의 수행 범위, 대상, 시기, 평가자 등
- 당기 주요 변화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및 미비점 시정조치 현황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계획 수립 시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필요성, 관리운영조직 구비 여부, 담당인력 보유현황, 담당자 경력·교육실적 등을 검토해야 하며 이는 사업보고서의 부속서류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임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2021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2021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202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진흥원, 「감사위원 및 감사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체크포인트」, 2021

V. 주요 행사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2023년 제1회 정기 포럼」 개최 결과

구분	상세		
일시	2023년 4월 18일 (화) 오전 7:30 ~ 9:30 (조찬 제공)		
장소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 오키드룸 (2F)		
참가대상	감사 및 감사위원님, 사외이사님 참석을 우선순위로 접수		
프로그램	사회: 김한석 (사)감사위원회포럼 대표		
	시간	내용	Speaker
	7:10 ~ 7:30	참가자 등록	
	7:30 ~ 8:00	조찬	
	8:00 ~ 8:10	환영사	유승원 한국회계학회 회장
	8:10 ~ 8:45	주제1. 자금사고 유형과 감사위원회가 유의할 사항	이승영 한국 딜로이트 그룹 수석위원 Audit & Assurance 본부 Transformation & Analytics
	8:45 ~ 8:55	Break time	
8:55 ~ 9:30	주제2. 텍스트 감성분석을 활용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의 내용 분석과 시사점	정석윤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다시보기

QR 코드



개회사 김한석 (사)감사위원회포럼 대표

- 2018년에 설립된 감사위원회포럼은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포럼 및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음
- 최근 다양한 산업군, 기업별로 크고 작은 자금 횡령 사건이 발생하며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과 예방에 대해 경영진과 주주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자금사고 유형 파악의 필요성과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에 감사(위원회)의 집중 감독이 요구되는 상황임
- 2023년 제1회 정기포럼에서 다룰 주요 주제는 “자금사고 유형과 감사위원회가 유의할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2개 주제의 세션을 제공할 것임

환영사 유승원 한국회계학회 회장

- 금번 정기포럼을 통해 자금사고 방지에 필요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함
- 자금사고 유형을 분류하고 이와 관련해 감사위원회가 유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텍스트 감성분석을 활용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의 내용분석과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

V. 주요 행사

(계속)

Session 1 - 자금사고 유형과 감사위원회가 유의할 사항

이승영 한국딜로이트그룹 수석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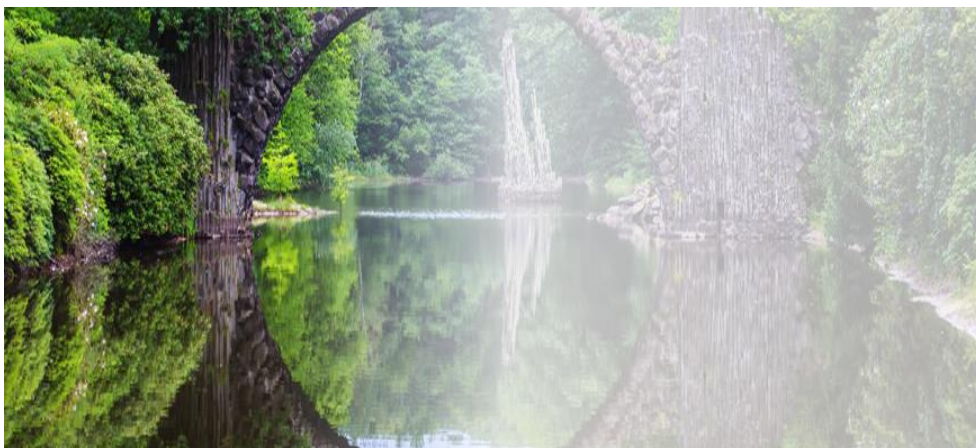
- 자금사고 현황 및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자금사고 유형에 대한 설명
- 외부감사 의견 변형기업 분석 및 자금사고 유형별 탐지 시나리오 사례 분석
-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감독, 내부자 신고제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시스템 평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유지와 향상을 위해 교육과 감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내부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함

Session 2 - 텍스트 감성분석을 활용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의 내용 분석과 시사점

정석윤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내부회계운영보고서의 감성지수를 통한 재무보고 품질 및 상관관계 분석
- 내부통제 분야에서 비정형데이터에 대해 NLP 감성분석기법 적용의 가능성을 제시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실시/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자의 공시정보를 기초로 한 평가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보고자의 관심이 필요하고 정보의 가치가 있는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함

* 감성분석이란 텍스트에 나타난 주관적 요소인 긍정 또는 부정 감정을 판별해 수치·도급·등급등으로 정량화하고 감성을 표현한 저자의 태도와 입장 등을 분석하는 연구기법



V. 주요 행사

Upcoming events

딜로이트 Global Boardroom 웨비나

[웹 세미나] 디지털 변화로부터 높아지는 성과: 이사회회의 교훈

구분	상세
일시	2023년 5월 9일 (화) 오전 12: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부탁드립니다.)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resa Briggs (Snowflake Inc, DocuSign Inc, ServiceNow 이사회 멤버) • David G. DeWalt (Delta Air Lines 이사회 멤버) • Angie Gifford (Meta, Thyssenkrupp AG 이사회 멤버) • Tim Bottke (Deloitte Digital TMT 리더)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는 기존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적 가능성과 성과 증대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기술을 받아들이며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고 있음 • 경쟁자로부터의 위협, 사회적 불안정, 기후 변화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이사회와 조직이 어떻게 투자하고 적응해야 하는 지 전략적인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디지털변화에 대한 투자를 감독하여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가치 창출이 이뤄지도록 보장해야 하며, 어떤 종류의 기술 전문성이 이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에 대해 이해도가 필요함

신청하기

QR 코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Workshop] 2023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공시담당자 Workshop

구분	상세
일시	2023. 5. 18(목) ~ 5. 19(금), 1박 2일
장소	소노펠리체 비발디파크(강원도 홍천군 소재, T. 1588-4888)
참가대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공시(주식)업무담당자
참가인원	약 200명 내외
신청기한	2023. 5. 9(화) - 상장회사협의회 기업법제팀에 문의 필요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장회사 주식공시 업무 관련 최근 이슈 및 대응 - 본회 실무책임자 2. 영문공시제도 해설 - 한국거래소 실무책임자 3. 전자공시 작성 및 제출 - 금융감독원 실무책임자

신청하기

QR 코드



V. 주요 행사

Upcoming events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3년 세미나

- 일시: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07:30 ~ 10:00
- 장소: 더 플라자 호텔 다이아몬드홀 (22F)
- 참가신청: 1) QR코드 스캔 후 참가 신청서 작성 or 2)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신청하기

QR 코드



시간	내용	연사
07:10 ~ 07:30 [20분]	참석자 안내	(사회자) 리스크자문본부 김학범 파트너
07:30 ~ 08:00 [30분]	조찬	
08:00 ~ 08:05 [05분]	인사말	한국 딜로이트 그룹 홍중성 총괄대표
08:05 ~ 08:35 [30분]	세션 1 국내 환경을 고려한 이사회 ESG 감독	ESG 센터 백인규 센터장
08:35 ~ 09:05 [30분]	세션 2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감독에 대한 역할과 책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박재환 중앙대 교수
09:05 ~ 09:15 [10분]	Break Time	
09:15 ~ 09:45 [30분]	세션 3 서베이 결과로 알아보는 글로벌 이사회·감사위원회 동향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
09:45 ~ 09:55 [10분]	Q&A	연사 3인
09:55 ~ 10:00 [05분]	맺음말	Audit & Assurance 본부 장수재 본부장

※ 세부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번 세미나는 ESG 관련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제고 및 당면한 주요 실무 수행 지원을 위해 기획됐으며, 국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이 주목할 만한 아젠다로 구성되어 총 3개의 세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V. 주요 행사

Upcoming events

딜로이트 Global Boardroom 웨비나

[웹 세미나] 감사위원회의 직면 이슈

구분	상세
일시	2023년 6월 7일 (화) 오전 12: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부탁드립니다.)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Janine Guillot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전 특별고문) Tushar Morzaria (BP PLC, Legal&General PLC 비상임이사) Theresa Taylor (CalPERS 이사회 회장) Joe Ucuzoglu (Deloitte Global CEO)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위원회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뤄야 할 복잡하고 진화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감사위원회는 최근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가 발표한 기후 관련 정보 공개 표준이 ESG보고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함 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새로운 문제를 처리하며 새로운 책임을 수행하면서도 기존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해야 함

신청하기

QR 코드



딜로이트 Global Boardroom 웨비나

[웹 세미나] 보상위원회의 도전과제

구분	상세
일시	2023년 6월 22일 (목) 오전 12: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부탁드립니다.)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 및 보상위원회 전문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상위원회가 다룰 이슈들과 그에 따른 도전 과제들을 다루며, 이에 대한 보상위원회의 대처방안과 이해관계자와 이익 균형을 맞추는 방법 등이 논의될 예정임 보상위원회 및 이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공될 예정임

신청하기

QR 코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김한석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